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1. 30 선고 2022가단13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자산관리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최정식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20. 11. 26. 접수 제56694호로 마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차전3269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8. “C은 원고에게 10,452,204원 및 그 중 2,565,000원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6. 8. 11. C에게 송달되어 2016. 8. 26.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C의 아버지인 소외 D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위 D은 2020. 9. 6.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0. 9.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0. 11. 26. 피고(C의 어머니이자 위 D의 배우자이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채권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취지로 협의분할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소외 E, C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 그런데 C은 2020. 10. 19. 망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2020. 11. 23.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20느단188호), 그 후 2020. 11. 25. 피고와 E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별지목록

1.경상북도 경주시

대60㎡

2.경상북도 경주시

[도로명주소]경상북도 경주시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소매점, 사무실

1층 소매점 53.58㎡

2층 사무실 53.58㎡

3층 사무실 53.58㎡

